

南北韓憲法에 나타난 平等理念 考察

1989



研究責任者：강 정 인 (서강大)

國土統一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
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
된 研究結果 報告書입니다.

本 研究는 社會主義가 추구하는 平等理念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北
韓 憲法에 나타난 諸分野 平等理念등을 研
究하였습니다.

이 冊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
資料로 積極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
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요 약 문

근대 불란서革命이후 平等은 自由와 더불어 인류가 追求하여야 할 이상으로 認識되고 있으며 현대의 모든 國家도 憲法에서 國家의 통치理念으로서 平等理念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各國家의 社會政治體制를 비교평가함에 있어서 平等의 실현도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 될 수 없다.

그러나 2차대전후 東西이데올로기의 대립은 平等理念의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平等概念은 진공속에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社會의 社會文化的 전통, 이데올로기적 기반, 社會經濟的 구조, 정치제도, 등 그 모두의 商號作用의 총체적 표현으로서 정식화된다.

南韓과 北韓社會는 분단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經濟體制를 그 지도理念과 社會構成原理로 채택함에 따라 동일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천년 이상 共有했음에도 불구하고 平等理念에 대한 이해 역시 다르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社會主義體制인 北韓社會의 平等의 理念과 현실을 南韓社會의 平等성을 염두에 두고 考察하고자 한다.

이러한 考察을 통하여 資本主義—自由民主主義體制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平等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社會主義 北韓은 사회경제적 권리에 있어서의 平等을 강조한다는 점을 暫定的 결론으로서 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논문은 北韓社會의 平等성을 社會經濟的 측면과 政治的 측면으로 나누어 考察한 후에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現代社會主義體制의 문제를 고전마르크스에 비추어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考察이 社會의 社會主義를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목하 진행되고 있는 동구권과 소련에서의 改革運動을 이해하는 데도 긴요하기 때문이다.

現代共產主義國家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根本적으로 두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고전마르크스주의가 社會主義를 단순히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이행함에 있어서 거치는 過渡期로 設定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와 生産手段의 사적소유 폐지를 제시한 것 이외에는 그 社會의 具體的 모습을 자세히 提示하지 않았기 때문에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난 후의 社會의 모습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合意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따라서 많은 社會主義國家가 단순히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인 소련식 社會主義모형을 기계적으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社會主義革命이 西歐의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일어나지 않고 後進資本主義國家나 반식민상태인 소련, 동구,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資本主義發展段階를 사실상 완수하지 않은 後進國에서 革命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의 共產主義國家는 資本主義的 生産양식을 청산하고 共產主義社會에 진입하기 위한 社會建設이라는 본래의 사명이외에도 추가적인 負擔을 떠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經濟的으로 資本主義段階에서 이룩하지 못한 생산력의 향상과 産業化를 성취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련社會主義는 급속한 工業化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최소한도의 실질적 삶을 確保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政治的 民主化는 등한시했기 때문에 社會經濟的 영역에서의 平等은 資本主義社會를 앞서는 진전을 이룩했으나, 장기적인 일당독재로 인해 政治的·市民的 平等에 있어서는 自由民主主義體制에 훨씬 뒤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소련식 社會主義를 모방한 많은 社會主義國家도 동일한 경험을 겪었다. 그리고 이점에 있어서 北韓社會主義도 예외는 아니다.

北韓은 社會主義體制樹立이후 제3세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급속한 産業化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所得의 平準化를 달성하였고 개인적인 사적 소

비의 증대를 통하여 生活水準의 향상을 꾀한 것이 아니고 社會的·集團의 소비의 증대를 통한 생활향상을 圖謀하였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社會생활에 있어서 平等化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의 대부분은 南韓의 中産層정도의 生活에는 미흡하지만 기본적인 생계에 있어서 곤란은 겪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平等을 達成했다고 할 수 있다. 教育制度에 있어서도 소수엘리트위주의 教育보다는 광범위한 대중教育에 주력하였으며, 11년의 無償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또한 세련된 의료시설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무료의료제도를 광범위하게 골고루 實施하고 있다. 北韓社會에 대해 비판적인 스칼라피노와 이전식教授도 그들의 저서에서 教育和 의료정책에 있어서 金日成의 業績은 北韓주민들도 일반적으로 認定하고 있다고 是認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格差와 男女不平等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平等化가 계층화를 방지한 것은 아니다. 출신성분이 나쁜 住民은 2등시민으로 여러가지 차별을 겪고 있으며, 고급당간부, 軍장성 및 特權知識層은 주택, 소득, 教育, 의료시설에 있어서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經濟的 지위가 계급의 중요 결정요인이 된다면 北韓에서는 政治的 地位에 따라 계층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政治的 平等은 현대國家에서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平等하게 政治的 영향력을 行使하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北韓의 선거제도, 政治적 비판의 自由의 결여, 軍중노선의 의례적 機能, 장기적인 共產黨 일당독재, 독립적인 중간집단의 결여, 黨과 政府의 關료화, 권력분립제도의 결여, 金日成에 대한 개인 숭배 등을 고려할 때 北韓社會는 극심한 政治的 不平等으로 특징지워지며 이는 自由民主主義實現이 불완전한 南韓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의 生計를 걱정해야 하며 충분한 敎育과 의료시설의 惠澤을 받고 있지 못하는 南韓의 하층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社會經濟的 平等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실업의 위협에 쫓기지 않는 北韓이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北韓住民의 생활수준에 대한 과장된 批判은 예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南韓의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判斷基準으로 삼은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南韓은 하층계급의 生活水準을 향상시켜 상층계급과의 格差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政治的 自由를 극심하게 억압하고 있는 北韓體制는 다당제의 도입, 의미있는 선거제도의 도입, 批判의 自由의 許容, 다양한 政治集團의 관용 등을 통한 政治改革을 통해서 政治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I . 序 論	1
II . 現行 社會主義國家의 問題點	7
III . 社會經濟的 平等	8
1) 北韓 憲法上的 平等條項	10
2) 具體的 檢討	11
IV . 市民的 政治的 平等性	23
1) 맑시즘의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政治的 平等性 批判	24
2) 政治的 平等의 平價基準의 摸索	28
3) 具體的 檢討	30
V . 結 論	40
參考文獻	45

1. 서론

근대 불란서革命이후 平等은 自由와 더불어 인류의 이상으로서 認識되고 있으며, 體制의 東西 빈부의 南北을 불문하고 현대의 모든 國家는 憲法에서 國家의 統治理念으로 平等理念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各國家의 社會政治體制를 비교평가함에 있어서 平等의 實現度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平等概念은 진공속에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特定社會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 社會經濟的 구조, 政治制度, 이데올로기적 기반 등 이 모두의 相互作用의 총체적 표현으로 定式化되기 때문에 平等理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各 國家別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¹⁾ 2차대전후 體制의 등서대립은 平等理念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로도 반영된다. 따라서 南韓社會와 北韓社會는 분단이후 相異한 이데올로기와 經濟體制를 그 지도理念과 社會構成원리로 채택함에 따라 동일한 文化와 傳統을 천년 이상 公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理念과 實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논문은 社會主義體制인 北韓社會의 平等性을 그 理念과 현실의 측면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먼저 北韓社會主義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社會主義와 이론적 社會主義의 괴리를 檢討하고, 둘째로 北韓의 社會經濟的 平等性을 살펴본다. 셋째로 北韓의 政治的 平等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北韓社會의 平等性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註1) P. Schwab and A. Pollis, "Liberal, Socialist and Third World Perspective of Human Rights," W.E. 버틀러저, 박홍규옮김,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서울:일월서각, 1988), p. 157.

2. 現代社會主義國家의 問題點

최근 동구, 소련, 중국에서 改革運動 및 개방정책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社會主義의 위기는 根本的으로 歷史的으로 실현될 현실의 社會主義와 고전마르크스주의에서 豫見한 이론상의 社會主義와의 커다란 괴리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괴리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두가지 原因에서 비롯하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전마르크스주의가 社會主義를 단순히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이행함에 있어서 거치는 過渡期로 설정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社會主義의 내용으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生産手段의 사적소유의 폐지를 주장한 것 이외에는 프롤레타리아^{革命} 후의 社會主義社會의 具體的 모습에 대해서 자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련에서 볼셰비키革命이 일어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社會主義社會의 具體的인 모습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간에 다양한 論爭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合意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歷史的으로 특수한 産物에 불과한 소련 共產黨의 一黨獨裁的인 政治體制와 中央執權的인 계획경제를 自發的이건 非自發的이건 社會主義社會의 유일한 모델로서 後發社會主義國家들이 기계적으로 답습하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마르크스는 一般的으로 社會主義^{革命}은 資本主義가 고도화되어 生産力의 社會化 生産手段의 사적 소유의 矛盾이 심각하게 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社會主義革命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社會主義革命은 서구의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일어나지 않고 後進資本主義國家나 반식민지상태였던 소련, 동구, 중국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 發展段階를 완수하지 않은 후진국에서 革命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의 社會主義政權은 資本主義的 生産양식을 清算하고 共產主義社

會에 진입하기 위한 社會建設이라는 본래의 사명 이외에도, 資本主義段階에서 도달했어야 할 生産力의 증대를 工業化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歷史的인 負擔을 추가로 떠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共產黨이 중앙집권화된 거대한 관료기구를 動員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常識的인 논점이 자주 간과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後進國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 났기 때문에 생긴 政治的 負擔이다. 즉 社會主義社會가 사실상 資本主義段階를 건너 뛰게 되어 생긴 經濟的 負擔 이외에도 自由民主主義단계를 건너 뛰게 되어 생긴 經濟的 負擔 이외에도 自由社會主義단계를 건너 뛰게 되어 생긴 政治的 負擔에 대해서는 별 學問的인 논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요청된다. 成熟한 資本主義體制에 근거한 부르조아民主主義는 시민의 여러 政治的 權利와 기본적인 人權을 보장하고 대의민주제를 實現하여 民主的 전통을 確立했다. 이에 비해 현대의 많은 社會主義國家는 전제군주제, 독재體制 또는 제국주의적 支配에 신음하다가 民主的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履行하였기 때문에 革命後 政權을 잡은 共產黨이나 일반 민중이나 모두 民主的 權力행사나 民主的 權利를 향유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일당독재로 전락하게 되었다.²⁾ 따라서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들은 基本的인 市民的 권리 보장을 소홀히 하게 되어 敵對的인 資本家階級이 청산된 후에도 여전히 독재적인 유산이 잔존 강화하게

註 2) 마르크스는 파리코뮌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民主的 側面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에 根據하여 카우츠키는 레닌의 불셰비키 일당독재를 批判했다. 兩者의 論爭에 관해서는 R. Tucker, "Max as a Political Theorist," in N. Lobkowitz, Marx and the Western Worl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7), pp.117-22 참조. 물론 소련 革命政府의 일당독재화의 原因은 戰爭이라든가 敵對的인 資本主義國家에 의한 포위, 짜르의 專制政治의 歷史的 有産 등 당시의 러시아의 狀況을 綜合的으로 考慮 檢討하여야 한다.

되었다. 이러한 점은 엘리트와 大衆一般의 政治關係가 지극히 不平等하고 政治的 平等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복수정당제도, 社會的·政治的 다원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自由의 구체적 보장 실패로 역사상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소련식 社會主義모델이 일반대중에게 最小限의 基本的 삶을 확보하고 급속한 工業化를 달성하여 나찌독일의 침공과 資本主義의 위협에서 生存할 수 있었다는 것은 歷史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賦與할 수 있으나 政治的 民主化를 등한시하여 國民의 市民的·政治的 권리의 彈壓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내연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식 社會主義를 모방한 많은 社會主義國家에서도 社會經濟的 측면에서는 팔목할만한 平等化를 이룩했으나 長期間의 일당독재로 말미암아 政治的·市民的 平等에 있어서는 西歐의 自由社會主義體制에 비해서 훨씬 뒤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처럼 이러한 一般的 추세에서 北韓 역시 例外는 아니다.

3. 社會經濟的 平等

1) 北韓憲法上的 平等條項

北韓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차 1기會議에서 1948년에 制定된 人民民主主義憲法을 24년만에 社會主義憲法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社會主義憲法中 社會經濟的 平等에 관련된 條項들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51조에서 총괄적으로 國家生活 各 분야에서의 平等權을 선언적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무상으로 治療받을 權利와 물질적 방조를 받을 權利(제58조), 능력에 따라 일하고 勞動의 양과 질에 따라 分配를 받을

權利(제56조3문), 無料義務教育을 포함한 教育을 받을 權利(제59조), 여성의 지위향상과 男女平等權(제62조)이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육체노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라고 規定하며 제26조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및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國家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항과 관련하여 北韓의 社會經濟的 平等性을 檢討해 보자.³⁾

2) 具體的 檢討

a. 富, 所得에 있어서의 平等性

北韓에서는 生産手段의 私的所有가 排除되고 個人所有는 근로자들의 개인 소비를 위한 所有만 認定한다.(北韓憲法 제21조)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수에 의한 生産手段 및 富의 獨占現狀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富의 平準化현상은 原則的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南韓에서도 全國民의 소수에 불과한 사람과 企業이 전국의 不動産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적이 있지만 이는 南韓社會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1960년의 調査는 全國民의 5%가 私所有財產의 75%를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30년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⁴⁾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에서 이러한 富의 편재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

註 3) 本論文의 北韓憲法の 引用은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서울, 1986)에서 하였다.

4) John Ress, Equality(London: Macmillan, 1972), p.30.

소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역사상 資本主義社會에서도 이러한 부의 편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누진적인 所得稅, 財産稅, 相續稅, 富有稅, 資本所得稅 등 각종 租稅 制度와 기간산업의 部分的인 國有化, 企業合兵이나 聯合의 規制와 같은 각종 手段을 동원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富의 편재 현상을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分配의 측면에서 주로 완화하고자 하나, 社會主義社會는 아예 生産의 측면에서 生産手段의 사적所有를 폐지하는 源泉的인 처방을 쓰는 것이 그 特徵이다.

北韓은 所得의 分配에 있어서 勞動의 양과 질에 따른 分配를 시행하고 있다. 北韓의 공식적 해석에 의하면 社會主義下에서는 아직 生産力이 全面的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필요한 소비품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能力과 才能을 다 바쳐 일하는 데 習慣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社會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發見하고 그들의 能力發揮를 극대화하고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차별화하는 同時에 최소한 財貨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平等化를 달성하는 것은 지난한 과업임에 틀림이 없다.

北韓에는 生産手段의 사적所有가 排除되어 있어 資本所得(이자, 지대, 이윤)이나 (個人消費以外的 所有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證券투자나 不動產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는 없다. 따라서 北韓에는 勤勞所得만이 존재한다. 北韓社會에는 이론상 완전(평생)고용이 실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勞動者들을 訓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生産性向上을 위해 매진하게 하는 중요한 原因중의 하나는 失業으로

註5)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총서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서울:태백, 1989), p.22

인해 인간이하의 生活水準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공포감이다. 이러한 이유로 資本主義는 生産의 능률을 기할 수 있지만 또한 (失業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한) 不平等이 내재적으로 構造化되어 있다. 또한 所得의 平準化를 위해 최대소득에도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人間性의 개조에 성공하지 않는 한 生産性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對策을 마련해야 하고 항상 물질적 자극과 道德的 자극을 어떻게 배합하여 勞動者들의 勞動의욕과 능률을 높이는가가 문제된다.

北韓의 소득分配구조는 調査의 시점과 調査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一般的으로 1:5에서 1:6정도로 推算되고 있다. 한 調査에 의하면 1984년 현재 北韓에서 최하의 零노동자의 月給이 60원에서 80원이며 사무원부장급인 당정치위원이나 특급기업소 支配人이 300원에서 350원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南韓의 경우 最低賃金과 大企業의 會長정도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개의 경우 15만원:500만원으로 잡아도 1:30이 넘는 數值이니 北韓의 所得 분포가 比較的 고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81년의 한 調査에 의하면 熟鍊工의 年所得이 3만불 大企業의 社長이 1.5백만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1:50에 해당하는 엄청난 比率이다.⁷⁾

따라서 北韓에 所得間의 격차에 따른 階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實質的인 階層간의 격차는 貨幣所得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여겨진다. 즉 貨幣所得이 北韓人의 生活水準을 결정하는 唯一한 要人이 아니며 그 사람

註 6) 북한개요, p.89 이러한 賃金格差를 學力差異와 연관시켜 分析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고현욱외, 북산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213-15 참조.

7) B. Moore, Jr., Authority and Inequality under Capitalism and Communism(Oxford: Claredon Press, 1987), p.65.

의 職業上의 地位에 따라 食糧, 및 피복보급, 주택의 規模, 특별의료혜택, 특별상점에 出入할 수 있는 資格의 여부가 決定됨으로 實質的인 生活水準의 차이는 貨弊所得의 차이보다 클 것으로 여겨진다.⁸⁾ 더구나 상층 엘리트의 경우에는 저택과 별장 등 상당히 호화로운 生活을 누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을 뒤집어서 南韓이나 기타 資本主義社會에도 適用해 볼 필요가 있다. 大企業體의 증역이나 高級公務員들은 基本給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판공비, 차량유지, 정보비 등)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賃金 이외에도 여러가지 資本所得과 非公式所得을 합산하면 實質的 生活水準의 차이는 상층과 하층의 경우 더욱 크다는 事實을 명심할 必要가 있다.⁹⁾

그러나 餘他 共產主義 社會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엘리트 역시 이러한 特權을 공개적으로 누리지는 못한다. 즉, 특별상점에서 무엇을 求入할 수 있는 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平等社會를 志向하는 社會主義社會에 不平等이 存在하는 것에 대한 罪意識의 반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¹⁰⁾

資本主義國家의 경우 通商의으로 個人의 社會的 地位는 經濟的 富와 所得에 依存하지만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의 경우에는 個人이 차지하는 政治的 地位에 의존한다.(politics in command). 북한 엘리트는 生産手段의 私的所有가 禁止된 고로, 物質生活의 향유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의 公式的인 地位에 依存한다. 따라서 그 地位를 상실하면 그가 기댈 수 있는 獨立的인 經濟的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安樂한 生活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고급주택, 지방의 별장, 승용차서비스, 특별

註8) R.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Vol.2 the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1282

9) 그러나 스칼라피노와 이정식教授는 이를 否認하고 있다. 앞의 책, p.1293 참조.

10) Moore, 앞의 책, p.110.

의료혜택, 특별상점출입권 등이 하루 아침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 高級 당간부라 할지라도 그의 地位의 存續與否는 金日成이나 기타 그보다 높은 상층부의 뜻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의 特權을 維持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結果를 成就하고 政治的 풍향의 變化에 민감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地位가 資本主義社會의 有産階級처럼 인정되어 있지 않다.

北韓의 支配엘리트가 그들의 特權의 地位를 다음 世代에게 承繼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資本主義에서 보는 私有財産의 상속이 없다는 점이 반드시 그들의 特權的 地位를 承繼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高等教育을 받은 부모의 자녀는 농민이나 육체勞動者의 자녀보다도 大學에 進學할 可能性이 높을 것이며 집안의 知的 情緒的 분위기가 또한 자녀의 教育의 成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教育을 통한 대물림은 可能할 것이다. 더구나 特權層의 자녀는 勞動者나 農民의 자녀보다 어렸을 때부터 出世에 필요한 인맥을 開發 活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¹¹⁾ 現在로서는 北韓의 上層엘리트는 과거의 엘리트 집안出身이라기 보다는 農民이나 勞動者出身이 많고 北韓의 社會主義歷史가 불과 40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支配階層이 自己保存能力과 再生産能力을 획득하여 支配階級으로 고착할 것인가에 좀더 시간적 餘裕를 두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北韓의 憲法 제26조가 規定한 것처럼 北韓은 都市와 農村의 차이를 줄이고자 勞力함에 있어서 比較的 成功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都

註11) 이러한 意味에서 完全한 意味의 機會均等은 實現不可能하다는 비관적인 見解에 대해서는 Ress, 앞의 책, p. p. 99-100.

12) 支配階層과 支配階級の 구별에 대해서는 P. Sweezy, Post Revolutionary Societ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0), pp. 130-31.

市 勞働者들의 生活水準이 농민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소련이나 중국에 比較해서도 낮은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¹³⁾ 이는 工業化를 위한 희생이 비교적 均등하게 부담되었음을 의미하며 農業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¹⁴⁾ 또한 北韓의 勞動力이 稀少하기 때문에 農村에 잠재실업률이 낮은 데도 起因한다. 또 北韓은 地方에 많은 工場을 建設하여 都農間의 均형발전을 피하고 人구의 都市集中을 강력히 억제하여 중국과는 달리 失業이나 잠재실업이 도시에도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고 관찰되고 있다.¹⁵⁾

無階級社會를 建設한다고 표방하는 北韓社會主義가 비록 社會經濟的 平等의 달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成果를 거둔 것은 事實이지만 아직 여러 階層이 存在한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 北韓社會의 上층부는 당간부, 軍장교, 一部 知識人들이 構成하고 있으며 그 밑에는 下級官吏를 포함 勞働者 農민의 勤勞大衆이 存在하고 있다. 特히 문제되는 것은 70년초를 基準 으로 成人의 10%에 該當하는 人民이 지주나 부르조아지의 階級成分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등市民으로 낙인 찍혀서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이 南韓으로 탈출하는 가장 重要한 동기라고 스칼라피노와 이정식教授는 指摘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나쁜 階級成分은 個人의 結婚 및 친구교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및 自殺의 主要原因이

註13)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p.1138, 1291. 그리고 두 教授는 1970년 대에 있어서 貧農의 경우 北의 農民生活이 南의 農民生活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 앞의 책, pp.1193.

14) 앞의 책, p.1153. 두教授에 의하면 農村의 전기화는 그것이 非經濟的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平等主義的 견지에서 일찍부터 施行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앞의 책, p.1128,

15) E. Brun and J. Hersh. Socialist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p.259: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119.

16) 앞의 책, p.764.

되기도 한다.¹⁷⁾ 이와 같이 階級에 의해서 한계 지워지는 人本主義를 北韓의 한 知識人은 다음과 같이 代辯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본주의는 階級적 고려를 초월한 막연한 식의 사랑이나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본주의는 勞動階級과 착취받는 대중에 대한 형제적 사랑과 커다란 희생을 그리고 적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투쟁심을 요구한다.¹⁸⁾ 無階級社會를 지향하는 社會主義政權이 들어선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카스트와 같은 制度가 存在한다는 것은 歷史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b. 教育 및 醫療

北韓은 憲法 제59조에서 無償의 義務教育을 받을 權利를 明示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1956년부터 4년제 初等義務教育을 채택한 이래 이를 점차 擴大하여 1975년 9월에는 전반적 11년제 義務教育을 實施하게 되었다.¹⁹⁾

이에 대해 北韓의 勞動者는 원래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고 最低生計費만 支給받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學生들에게 支給되는 學用品의 양과 질이 형편없다. 궁극적으로 金日成의 唯一思想注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批判的 指摘이 있다.²⁰⁾ 그러나 이는 批判의 方向이 잘못된 것으로 궁색한 변명처럼 느껴진다. 學用品의 양과 질이 형편없다는 指摘은 南韓의 中產層 이상이 계층에게는 設得力이 있는 批判인지 모르지만 모든 學用品을 힘겹게 조달해야 하는 南韓의 빈곤층은 國家가 學用品을 무료보

註17) 앞의 책, pp.764-65. 北韓은 이들을 점차 사면하고 있다한다; 앞의 책, p. 835.

18) 앞의 책, p.875에서 再引用.

19) 북한개요 p.116

20) 앞의 책; 김동환, “북한헌법에 있어서 기본권,” 최종고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95.

급한다면 이를 積極 환영할 것이다. 또한 金日成 唯一思想의 注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指摘 역시 뒤집어 南韓의 教育現實에 適用해 보면 高等學校까지의 南韓의 教育制度 역시 資本主義的 가치의 注入, 유치한 차원의 反共教育, 그리고 現政權의 미화 및 體制維持에 주력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制度教育이 原則적으로 體制維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批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南北韓에 똑같이 適用된다.²¹⁾ 마지막으로 원래 教育費用이 勞動의 댓가의 일부로서 國家에 의해 積立된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한다면 왜 南韓에서도 그와 類似한 教育體制制度를 도입하여 義務教育制度를 확대하여 貧富의 差別없이 均等한 教育을 받도록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疑問이 제기되며 이러한 점에서 北韓의 教育政策이 南韓보다 앞서 있다는 批判이 提起될 수 있다.

南韓도 憲法 제29조 1항에서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明示하고 있지만 中等학교 이상을 進學하는 데는 精神的·肉體的 能力 못지 않게 재산의 貧富가 決定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北韓의 教育도 내용과 質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11년의 義務教育의 實施는 우선 形態적으로 北韓의 모든 인민이 貧富에 구애받지 않고 11년의 教育을 받을 資格이 있다는 점에서 6년의 義務教育을 實施하는 데 불과한 南韓과 比較할 때 그 期間에 있어서 劃期的으로 아니 할 수 없다.

北韓의 教育은 正規教育 이외에도 成人教育에 주력하여 文盲退治를 위해 勞力하며, 工場大學制度和 通信教育制度를 導入하여 一般勞動者에게 機械工學, 化學, 電子工學 등의 技術教育을 광범위하게 實施하고 있다. 이러한

註21) 목하 전교조에 의해 主張되는 참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 애매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南韓의 教育制度도다도 그 質에 있어서 밝은 將來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에서 北韓의 義務教育은 엘리트양성보다는 大衆教育에 勞力를 경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²²⁾ 1960년대에 北韓當局은 100% 産業勞動者가 동시에 學生이라고 主張하나 좀더 조심스러운 主張은 60%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²³⁾

醫療施設의 혜택에 있어서도 北韓憲法 제58조 1문은 무상의료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인민의 보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는 社會主義體制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로 “社會主義 體制維持에 필수적인 것을 他體制에 우월운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批判이 있다.²⁴⁾ 이러한 批判 역시 억지성이 짙은 것 같다. 南韓의 全國民 醫療保險制度의 實施는 종래의 醫療制度에 비해서 커다란 進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를 體制維持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공박하는 것은 批判을 위한 批判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앞의 批判도 그 의미를 잃는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教授는 教育과 醫療施設대해서 대부분은 北韓人民은 만족하게 생각하고 技術하고 있다.²⁵⁾

c. 男女平等

北韓憲法 제62조는 “국가는 여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의 男女平等에 대해서 北韓概要는 “북한의 여성은 남자와 평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가사의 사회책임화로 인해 여성들은 과거와 같은 가정의 주부 또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註22)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p.913, 916.

23) 앞의 책, p.1290.

24) 김동한, 앞의 글, p.94.

25)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1175.

26) 북한개요, pp.79-80.

없는 실정이다”라고 명쾌하게 技術하고 있다.²⁶⁾ 여기서 “찾아 볼 수 없는”, “과거와 같은 가정의 주부 또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다소 鄉愁의 表現이나 이 구절이 여성의 家事勞動을 통한 남성에게 대한 종속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의 측면도 包含하고 있다면 이는 北韓에서 男女의 平等은 훨씬 進展되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一般的으로 공동주택 및 공동취사제도, 식품가공공업의 發展, 탁아소, 유치원 施設의 擴張과 모든 어린이의 社會的 養育,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女性들의 6시간 勞動 制 實施 등에 따른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1976년 현재 北韓女性의 勞動參與比率은 48%를 構成하고 있으며 이는 勞動력不足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동원”으로도 解釋할 수 있으나 西歐나 日本과 같은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도 직장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必要가 있다.²⁸⁾ 또한 性別 年齡別에 상관없이 同一勞動에 대해서 同一報酬를 받든다는 점에서 南韓의 보수관행보다 進步的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女性勞動은 一般的으로 報酬가 낮은 직종에 집

註27) 김용기, 앞의 글, p.215, 북한개요, pp.80-81.

28) 김동한, 앞의 글, p.98. 이창수의 調査에 의하면 역대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된 女性의 比率은 약 20%에 이르며 이는 漸進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이는 대의원입후보를 지명함에 있어 黨이 상당한 배려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50%에 이르지 않는다고 批判하는 것도 可能하나 現實的으로 南韓이나 많은 資本主義國家에 비해 높은 比率이라는 事實도 상기할 必要가 있다. 이창수, “사회정책과 체제발전,”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법문사, 1985), p.231. 앞에서 引用한 이창수, 김용기, 김동한의 글은 北韓社會의 平等性을 檢討하는 데 있어 주로 無階級社會를 주장하는 北韓의 이데올로기나 絶對的 平等의 실현여부에 따라 批判하는 데 이는 北韓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어느 國家도 그들이 제시한 기준을 充足시킬 수 없기 때문에 現實性을 결여한 批判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資本主義國家나 南韓과 비교하여 北韓의 平等性을 음미하는 方法 역시 併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북한개요, p.90 : 이창수, 앞의 글, p.235.

증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女性들의 報酬가 資本主義社會에서와 마찬가지로 獨立된 가구주로서보다는 가사보조수입으로 認定되는 데 비롯하는 것 같다. 특히 纖維工場에서 일하는 未婚女性의 勞動條件은 賃金과 特別給與에서도 특히 貧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3) 全體的 評價

北韓은 社會主義體制 樹立이후 제3세계의 여러 나라와 比較하여 급속한 産業化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³¹⁾ 그리고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를 廢止하여 不勞所得이 없어지고 資本의 集積 집중에 의한 富의 獨占現狀이 없기 때문에 資本主義國家에 비해 所得의 平準化現狀을 成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私的消費의 增大를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보다는 社會的·集團的 消費의 增大를 통한 生活向上을 圖謀하였기 때문에 文化生活이나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상당히 平等化되어 있다.³²⁾ 더구나 文化生活에 있어서 다양한 사치성 欲求를 만족시키는 施設이 없기때문에 北韓人民은 다분히 청교도적인 生活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시가지는 화려한 네온사인 광고로 뒤덮여 있지도 않다 한다.³³⁾ 資本主義社會의 制度化된 낭비와 부패에 환멸을 느낀 者에게 北韓人民의 삶은 다분히 呼訴力이 있을 수도

註30) 스킨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1276.

31) 北韓의 經濟發展에 대한 比較的 客觀的 檢討에 대해서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를 참조.

32) 김종익, “긴 여행,”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서울:한울, 1986), p.29. 社會主義建設을 위해서는 個人的 이기화를 防止하는 集團的 消費의 증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Sweezy, 앞의 책, pp.20-22참조. 공장이나 집단농장에 있어서 勞動者와 農民이 生産目標을 달성하거나 초과달성시 個人的 補償보다는 集團的 補償을 하고 있다. Brun and Hersh, 앞의 책, p.390.

33) 앞의 책, p.282.

있다.³⁴⁾

北韓人民의 대부분은 南韓의 中産層 정도의 生活에는 未洽하지만 社會主義經濟의 특성상 完全雇用下에서 基本的 生計에 필수적인 소득, 교육, 의료 및 주택은 대다수 人民에게 提供된다는 점에서 比較的 平等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人民은 南韓의 中産層이 누리는 “生活의 쾌적함”을 맛볼 수 없을지 모르나 또한 남한 주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交通難, 産業公害로 인한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染, 食品公害, 入試地獄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教育競爭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所得의 편차가 적고 외부로부터 폐쇄된 社會에서 살고 있는 北韓人民은 南韓에서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와 전시효과로 인한 相對的 貧困感에 덜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同時에 냉장고, 전화, 텔레비 등 南韓社會에서는 生活의 必需品이라고 생각되는 내구소비재들의 價格이 상당히 비싸게 策定되어 이러한 것을 구입하려면 몇 달씩 貯蓄을 해야 하기 때문에 人民大衆이 기본적인 生活充足의 水準을 벗어나 比較的 文明의 이기의 혜택을 누리는 쾌적한 삶으로 비약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北韓社會의 生産力이 이러한 낮은 消費水準대한 불만제기를 效率的으로 防止하기 위해서 北韓은 外部社會 및 南韓의 生活相을 알리지 않고 北韓住民을 고립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現在의 生活相을 과거 日帝治下나 6·25당시의 비참한 삶을 상기시킴으로써 北韓住民에게 相對的 만족감을 불어 넣어 주고자 勞力하고 있다.³⁵⁾ 따라서 北韓의 生活은 南韓의 中産層 立場에서 “빈곤속의 평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北韓의 立場에

註34) 앞의 책, pp. 282, 284.

35) 이만우, “북한의 자화상,” 양성철 박한식, 앞의 책, p. 142.

서 南韓 生活은 “풍요속의 빈곤”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文化革命의 와중에서 毛澤東은 앙드레 말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인간성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주의를 복권하는 것은 아니지만...불평등을 부활시킨다. 새로운 계급을 창출하도록 [인간의 본성에 내연하는] 힘은 막강하다.”³⁶⁾ 현재 達成한 平等의 水準을 成就하기 위해 北韓이 지불한 댓가는 결코 적지 않다. 즉 社會經濟的 平等이 인간의 多樣性和 創意性を 억누르고 劃一的인 強制에 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人民이 金日成 主體思想에 따라 注入 教育되기 때문에 黨의 명령에 따라 行動하고 思考하기 때문에 다양한 平等이 아니라 劃一的인 平等이 支配하는 社會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애써 이룩한 社會 經濟的 平等의 成果는 다음에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심한 政治的 不平等의 存在에 의해 그 빛을 잃는다.

4. 市民的 政治的 平等性

北韓社會의 市民的 政治的 平等性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國家의 政治體制가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不平等性을 批判하고 거기에 根據하여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우월성을 主張하고 이를 통해 歷史의 궁극적 目標인 平等하고 自由로운 共產主義社會로의 履行을 希求하기 때문에 먼저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主張을 간략히 살펴 보고 거기에 根據하여 政治的 平等을 確保할기 위한 基準을 提示하고자 한다. 그리고 提示한 基準에 根據

註36) Sweezy, 앞의 책, p.147에서 再引用

37) 이만우의 여행 觀察에 의하면 소련이나 중국을 訪問해도 公的인 見解와 私的인 見解가 뚜렷이 구분되는 데 반해 北韓人民의 경우 兩者의 차이가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의 글, p.141.

하여 北韓社會의 政治的 平等性を 살펴 보고, 이어서 전체적인 評價를 내리고자 한다.

1) 맑시즘의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政治的 平等性 批判

맑시즘의 부르조아 民主主義에 대한 가장 痛烈한 批判은 부르조아 民主主義가 形式的으로 政治的 權利를 平等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좋은 口號에 불과할 뿐이며, 法律上 保障된 平等한 政治的 權利는 現實에 있어서는 不平等한 經濟力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共產黨宣言에서 資本主義社會에서 國家는 전체 부르조아 계급의 共同事務를 관장하는 하나의 委員會에 불과하다고 宣言했다.³⁸⁾ 따라서 마르크스가 私有財産을 社會化하고자 한 것도 政治的 不平等의 決定的 源泉인 富의 不平等을 除去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選舉制度를 아무리 平等하게 改革하여도 소수가 生産手段을 장악한 경우 政治的 平等은 實現 不可能하다는 立場은 레닌의 부르조아 民主主義批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부르조아 民主主義는 資本家の 착취에 의해서 편협한 한계내로 절단되며 따라서 항상 소수를 위한, 즉 有産階級, 富者만을 위한 民主主義에 불과하며 資本家階級이 완전히 소멸한 共產主義社會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民主主義가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완전한 民主主義에는 未洽하지만 소비에트政府는 가장 民主的인 부르조아 共和國보다도 백만배나 더 民主的이라고 強辯하고 있다.³⁹⁾

註38) D. 맥켈런저, 신오현역, 칼 마르크스의 사상(서울: 민음사, 1986), p.268.

39) Rees, 앞의 책, pp.45-46에서 再引用.

普通選舉權이나 選舉制度的 改革을 통해서도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政治的 不平等性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實시증적 批判은 단순히 生産手段을 장악한 소수의 부르조아가 物理的 強制力을 行使하여 政治的 支配階級으로 군림한다는 측면에서만 提起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데올로기나 안토니오 그람치(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概念에 대한 基本的인 이해는 부르조아民主主義의 政治的 不平等을 또 다른 측면에서 把握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각 시대에 있어서 支配階層의 아이디어(이념이나 관념)는 支配적인 아이디어이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⁴⁰⁾ 支配階級의 理念的 代辯者들은 자기들의 專門的인 能力을 발휘하여 支配階級의 理念 및 觀念을 完成하고 體系화한다. 支配階級이 表現手段의 主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支配階級의 理念 및 觀念은 大衆에게 자연스럽게 擴散 보급되어 支配적인 理念 및 觀念이 된다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支配階級이 이데올로기를 統制함으로써 그들의 支配를 永續化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否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힘과 迫力을 過小評價했다. 즉 모든 계급社會에는 계급간의 갈등이 항상 내연하고 있으며, 支配階級の 支配, 즉 政治的 不平等은 이데올로기의 造作使用보다는 國家權力의 物理的인 抑壓手段에 의해서 維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그람치는 市民社會에 내연하는 계급간의 갈등이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主張처럼 쉽게 全面的이고 격렬한 계급鬪爭으로 發展하는 것이 아니고 헤게모니에 의해서 效率的으로 中和되어 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태리 歷史에 대한 曠中사고에서 그람치는 特定한 社會集團의 우월성은

註40) Robert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ition(New York : W.W. Norton, 1972), p.172.

두가지 形態로 나타나는 바, 그 하나는 國家의 物理的 強制力을 行使하는 기구에 의해 實現되는 “支配”(dom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市民社會의 制度를 통해서 나타나고 行使되는 “知的이고 道德的인 指導力”(intellectual and moral leadership)이라고 말했다. 後者の 形態를 取하는 우월성이 헤게모니를 構成한다.⁴¹⁾ 그윈 윌리엄즈(Gwyn Williams)의 解釋에 의하면 헤게모니는 “特定한 生活 및 思考方式이 支配的인 秩序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現實에 대한 特定한 觀念(개념규정)이 制度的인 形態로건 私的인 形態로건 社會全般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社會의 취향(기호), 道德, 慣習, 宗教, 政治的 元利, 기타 모든 社會的인 제관계를 특히 知的 道德的 차원에서 규율하는 秩序”를 의미한다.⁴²⁾ 따라서 헤게모니는 特定 集團이나 계급이 武力에 의해서 획득한 支配가 아니라, 被支配者의 同意에 의해서 획득한 支配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는 根本的으로 受動的인 性質의 것이다. 大衆이 不平等한 부르조아 民主主義를 받아 들이는 理由는 社會秩序가 그들의 바라는 바를 表現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大衆이 자신들의 불만을 效率的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依據하여 現實을 變革할 수 있는 概念的 도구, 즉 명확한 理論的 의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이몬즈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어느 社會의 어떠한 時期에도 우리가 支配的고 效率的으로 부를 수 있는 “中樞的인 慣行, 意味, 價値體系”가 존재한다. 이러한 中樞的인 意味와 價値體系는 單純히 推想的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現實을 組織하는 原理이며 우리가 具體的으로 經驗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게모니는 그 영향력하에

註41)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p.56.

42) Gwyn Williams, “The Concept of ‘Egemonia’ in the Thought of Antonio Gramsci,”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Oct.-Dec. 1960), p.587.

놓여있는 大多數 成員에게 人間과 體系에 대한 一般的 認識의 틀을 提示하고, 常識의 限界를 設定하며 그들의 現實感覺을 構成한다.⁴³⁾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普遍的인 妥當性이나 重要性을 가진 것으로, 社會成員간에 당연한 것으로 제시되는 中樞的인 慣行, 意味 및 價値體系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부르조아階級の 支配를 表現하고 承認하는 것이라는 事實이다. 따라서 부르조아社會主義에서 다양한 政治制度는 물론 支配的인 社會的 價値, 規範, 慣習이 부르조아階級과 勞動階級 사이에 存在하는 政治的 不平等을 正當한 것으로 注入, 高취 擴散시키키며, 前者의 後者에 대한 支配를 正當化하는 도구로서 奉仕하며, 나아가서 그 支配에 대한 被支配階級の 同意를 창출하는 데 重要的 功헌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理由로 레닌은 壓倒的 多數人 억압받는 大衆의 利益을 위한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소수의 資本家 階級을 위한 부르조아民主主義보다 훨씬 平等하다고 主張한 것이다. 또한 맑시즘의 궁극적 目標인 共產主義社會에 대해 엥겔스는 인류가 共產主義社會에 到達하면 政治的 不自由平等의 根本的 表現인 國家가 소멸하고 “인간의 통치”는 “사물의 행정”으로 轉換하고 生産者들의 自由롭고 平等的인 0에 의한 生産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⁴⁴⁾ 또 고타강령批判에서는 마르크스는 共產主義社會가 보다 높은 단계에 到達하면 인간은 勞動분화로부터 解放되며 “사회는 그 깃발에다 ‘각자의 능력에 따른 분배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로!’라는 구호를 새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담한 비전을 提示하고 있다.⁴⁵⁾

註43) Raymond Williams, “Base and Superstructure in Marxist Cultural Theory,” *New Left Review*(November-December, 1973), pp.8-10

44) Ress, 앞의 책, p.65에서 再引用. 이러한 平等社會의 實現可能性에 대한 상세한 理論的 檢討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61-79 참조.

45) 맥켈런, 앞의 책, p.158 再引用

2) 政治的 平等의 評價基準의 摸索

治者と 被治者の 구별이 消滅되는 完全한 意味에서의 政治的 平等이나 모든 國民이 恒常적으로 國家의 重要한 政策決定에 直接 參與하고 執行하는 直接民主主義를 政治的 平等의 極대치로서 政治哲學의 立場에서 그 바람직함과 可能性에 關係 고려하는 것은 意味가 있지만 現實의 國家의 政治的 平等性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使用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代의民主政治가 불가피하다는 前提에 설 때, 政治的 平等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社會經濟的 平等—富와 所得의 公平한 配分, 教育機會의 均等한 保障, 人間の 尊嚴性을 維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生活保障—의 實現 이외에도 政治的 要素로는 첫째, 普通選舉權, 둘째, 박해의 두려움이나 特別한 혜택없이 各 個人 自身の 意見을 表現하고 이를 爲해 行動을 취할 수 있는 自由, 셋째, 政治的 目標을 達成하고 政治的 活動에 影響을 미치기 爲해 他人과 더불어 集團을 組織할 수 있는 自由가 要求된다. 이러한 活動을 遂行하기 爲해서 各 個人이 平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⁴⁶⁾ 이러한 原理의 制度的 表現은 體制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實質的인 政治的 平等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體制의 差異를 불구하고 關切되어야 할 것이다. 普通選舉權의 保障에 따라 政治的 平等을 實效적으로 確保하기 爲해서는 社會構成員의 政治的 影響력이 加급적 均等해야 하는 데, 이의 保障을 爲해서는 表現의 自由와 政治的 活動의 自由가 必要하다. 더구나 民主主義가 多數의 輿論로부터 少數의 權益을 保護하기 爲해서, 즉 小數가 多數의 支配的 意見이나 價値에 對항하여 自身들의 立場을 設得하기 爲해서, 특히 重要하다.

註46) Ress, 앞의 책, p. 49.

위에 提示한 세가지 要素 중 普通選舉權을 除外한 나머지 두 要素는 어느 社會에도 完全히 實現되기 어렵다. 앞의 맑시즘의 부르조아 社會主義 批判이 時事하듯이 어느 社會나 法的 經濟的 制限 이외에도 그 社會의 支配的인 價値, 規範, 및 慣習이 直接 間接으로 效率的인 검열작용을 行使하여 다양한 모든 意見이나 批判을 公正하고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南韓이나 北韓에서 한 個人이 전제군주제의 부활을 진지하게 主張한다해도 그는 政治的 박해를 당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보다는 단순히 우스개소리로 멀시나 無關心의 對象이 되거나 기껏해야 週刊誌의 흥미거리 기사로 1회용의 取材 對象이 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앞에 提示한 平等의 政治的 基準에 대해서 이는 단순히 소위 自由民主主義의 政治的 平等理念을 提示한 것으로 이를 根據로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의 政治的 平等성을 檢討하는 데는 中立的이고 客觀的이지 않다는 批判이 提起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네 가지 反論을 提起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檢討한 것처럼 自由民主主義가 부르조아의 理念과 가치를 表現하고 그들의 支配를 正當化하는 體制에 불과하다는 批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국, 서독, 이태리, 불란서, 스웨덴 등의 西歐民主國家에서 社會主義政黨이나 共產黨이 누리는 커다란 政治的 영향력은 批判의 自由와 政治的 多元성의 인정에 根據하기 때문에 이러한 制度가 상이한 體制를 收用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서 平等성의 檢討의 基準이 될 수 있다. 둘째, 最近의 동구와 소련의 民主化改革 역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原則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重要 내용으로 批判과 反對의 自由를 擴大 認定하고 多黨制의 收用에 따라 政治的 多元主義를 收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제의 基本要素로서 提示한 앞의 基準이 단순히 資本主義에만 適用可能한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와도 兩立可能하다면 이를 基準으로 채택하는 것이 體制偏向的인 基準으로서 반드시 客觀性을 몰수하

는 것은 아니다. 세째로 이러한 基準이 自由民主主義에서 표방된 理念이지만 이러한 理念에 비추어 自由民主主義社會의 政治的 不平等性을 批判적으로 檢討하는 것은 얼마든지 可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⁷⁾ 즉, 判斷의 尺度는 궁극적으로 그 社會의 内部에서 유래하지만—인간의 의식이 歷史와 社會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그 社會를 超越하여 그 社會를 評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憲法도 비록 프롤레타리아 獨裁理論에 의해 契約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元利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準에 입각하여 北韓社會의 政治的 平等性을 檢討해도 客觀性을 喪失하는 것은 아니다.

3) 具體的 檢討

a. 表現과 批判의 自由의 問題

北韓憲法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으나(53조 1문) 이러한 表現의 自由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 전적으로 복무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궁극적으로 黨의 영도와 國家의 統制下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⁸⁾ 知的 藝術的 活動의 領域에서도 社會主義的 事實主義原理에 立脚하여 광범위한 檢閱制를 實施하여 知的活動과 創作活動의 自由를 抑壓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人民은 共產主義者로서만 자신들의 생각을 自由롭게 表現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個人이 共產主義

註47) Ress는 앞의 책, pp. 45-60에서 동일한 基準을 使用하여 自由民主主義의 平等性을 준엄하게 檢討하고 있다.

48) 김동한, 앞의 글, p. 87에서 再引用

者로서 말하고 있는가는 오직 黨이 決定할 뿐이다. 北韓은 司法部에 違憲審査權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憲法의 解釋은 오로지 黨에 의해 決定될 뿐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治的 批判의 自由가 許容될 空間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교수에 의하면 北韓에서 體制批判은 극도로 위험하며 심지어는 사소한 私的인 發言도 심하게 處罰된다고 한다.⁵⁰⁾ 또한 전일적인 이데올로기가 支配하기 때문에 이러한 批判은 단순한 反對가 아니라 反逆으로 取扱된다는 點은 단순히 一般人民과 政府의 關係뿐만아니라 公산당내의 엘리트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北韓人民들은 生活條件, 勞動條件, 社會經濟的 狀況에 대해서 不滿이 있다고 해도 公開的으로 물론 私的인 자리에서도 이를 表出하지 않는다. 이러한 不滿이 表出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意識的 無意識的인 不作爲의 形態로, 즉 怠業이라든가 共同財産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든가 하는 形態로 表출된다.⁵¹⁾

따라서 一般市民이 公開的이고 意識的으로 엘리트의 政治的 決定에 影響력을 미치기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兩者 사이에 존재하는 政治的 不平等의 골은 깊다. 흔히 獨裁政權이라고 批判되는 南韓의 政治狀況下에서도 여러가지 迫害나 彈壓의 危險이 따르는 것은 事實이나 자신의 批判的 意見을 表現하고 政權에 反對하는 政治的 團體를 結成할 수 있는 自由가 北韓처럼 封鎖되어 있지는 않다.

民主主義 中央執權制(democratic centralism)原則 (北韓憲法 制 9條)의 採擇에도 불구하고 北韓을 包含한 社會主義國家에서 政治的 多元主義의 根

註50) 앞의 책, p. 830 - 31.

51) 앞의 책, p. 1175.

據인 正當한 反對 (legitimate opposition)의 概念이 存在하지 않는다.⁵²⁾ 배링튼 무어에 의하면 正當한 반대란 심각한 政治的 爭點을 제기하고 거기에 의거해 不滿을 제기하며 지배엘리트를 批判할 수 있는 權利이다.⁵³⁾ 물론 社會主義社會에도 公開的인 批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批判, 등소평 體制下에서 활발히 批判되는 모택동의 文化革命을 비롯한 失政이나, 金日成의 宗과주의자 批判 등 公開的인 批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은 항상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또는 최소한 그들의 묵시적 同意나 재가하에서 現在의 政策에 맞추어 展開된다. 따라서 許可받지 않은 批判은 宗과주의나 體制顛覆의 企圖로 받아 들여질 소지가 많다.

혹자는 대부분의 人民이 基本的 生活을 누리고, 동시에 政權을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 表現과 批判의 自由가 그렇게 重要한 要所는 아니며 單純히 知識人의 사치에 불과하다고 主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칼라피노와 이정식교수도 北韓政權이 대다수의 人民으로부터 正統性을 獲得하고 있다고 是認한다.⁵⁴⁾ 이러한 主張에 대해서는 3가지 點에서 反論이 可能하다. 첫째로 知的인 自由가 自意的으로 彈壓을 받을 경우 一般大衆도 항상 그러한 自意的 彈壓의 犠牲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둘째로 民主主義는 단순히 人民을 위한 政治일뿐만 아니라 人民에 의한 政治라는 사실

註52) 물론 最近의 社會主義權의 改革에서 多黨制의 導入과 國民에게 批判의 自由를 保障하는 움직임은 이러한 概念을 收用해 가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53) Moore, 앞의 책, p.109.

54)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844 두 教授의 이러한 正統性의 概念은 北韓 人民들의 主觀的인 支持度의 側面에서만 把握한 것으로 問題가 있다. 그런 식의 正統性 概念에 의하면 國民大多數의 支持를 받았던 나찌나 日本의 軍國主義政權도 正統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막스 베버의 正統性 概念이래 現代政治學의 晚成的인 疾病과 關聯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John Schaar, Legitimacy in the Modern State(New York: Transaction Books, 1981)의 같은 제목의 論文, pp.15-51 參照

이다. 構成員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政治參與를 위해서는 批判과 表現의 자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壓倒的인 多數가 支持한다 할지라도 少數者의 權益을 多數의 橫暴로부터 保護하기 위해서는 批判과 表現의 자유가 活性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가장 強制的이고 抑壓的인 警察國家로 알려지고 있다. ⁵⁵⁾

b. 政治的 多元性的 缺如

정당한 반대의 자유가 保障되기 위해서는 複數政黨制가 實效的으로 確保되고, 國家로부터 獨立한 多様な 中間集團이 活性化되어야 한다. 北韓憲法은 제 53조 2문에서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이름아래 노동당의 一黨獨裁가 政權樹立後 持續되고 있으며 政府로부터 獨立한 社會團體도 認定되지 않고 있는 現實이다.

北韓은 노동당의 우당으로서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을 認定함으로써 複數政黨制의 外觀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名目上의 存在에 불과하고 1960年 以後에는 이 두 黨은 단지 平壤에만 그 本部가 存在하고 전혀 地方組織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1962年 第 3期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以後부터는 名目上 몇명의 代議員을 내는 데 불과하다. ⁵⁶⁾

北韓에는 많은 大衆組織이 있다. 그 중 가장 重要的 것은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朝鮮職業總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의 成人은 누구나 빠짐없이 4個의 조직 중의 하나 이상에 加入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⁵⁷⁾ 그러나 이러한 大衆組織은 北韓人民의

註55)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1303

56) 앞의 책, p. 698: 김영래, “북한의 당 국가체제와 선거제도” 최종고의, 北韓의 法과 法理論, p.168.

57) 정중욱, “대중조직,” 김준엽 스칼라피노 共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 p.108

黨에 의한 動員과 權力行使를 效率的으로 確保하고 엘리트充員을 위한 등용문으로 使用될 뿐 獨自的인 反對와 批判의 機能을 行使하지 않고 있다.⁵⁸⁾ 北韓의 大衆組織은 “당과 지도자의 지휘아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적 단체이며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사이를 연계시키는 매개체”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黨으로부터의 獨立性이나 自主性은 애당초 封鎖되어 있다.⁵⁹⁾ 大衆組織은 黨의 政策과 指導者의 指揮를 충성스럽게 따라야 함으로 이들에게서 黨의 政策과 指導者에 대한 批判을 期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⁶⁰⁾

北韓의 이러한 一元的인 政治制度는 소련과 中國의 例를 따라 北韓당국도 階級鬪爭을 적대적 鬪爭과 비적대적 鬪爭으로 區分하는 데 根據한다. 金日成을 비롯한 指導者들은 内外의 階級の 的들에게는 모든 무기를 동원한 總力戰을 전개하고 프롤레타리아 내부에 남아 있는 낡은 資本主義의 사상전개는 階級內的인 비적대적인 鬪爭으로서 設得과 思想教育을 통해서 解決할 것을 主張한다. 이러한 敎理는 겉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한 個人이 프롤레타리아階級の 적이 되는 지에 대한 明確하고 客觀的인 基準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간의 權力鬪爭에 있어서 自身의 政治的 반대자에게 주자파라든가 資本主義反動으로 烙印을 찍어 肅清하는데 濫用되어 왔다. 즉 궁극적으로 승리한 엘리트가 自身의 入場을 正當化하기 위해서 自意的으로 敵對的 鬪爭과 非敵對的 鬪爭의 區分을

註58) 따라서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大衆組織이 共產主義理念教育 및 經濟煽動의 道具에 불과한 것으로 主張한다. ; 앞의 책, p. 708~10.

59) 정중욱, 앞의 글, p. 108에서 再引用

60) 1950年代末 北韓에서 權力鬪爭이 고조되었을 때 造船職業總同盟의 委員長인 서희는 職業總同盟에 대한 黨의 統制를 拒否하고 大衆組織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自主성과 獨自的인 自律性的 權利가 주어 져야 하며 勞動者에게도 罷業權이 認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중욱, 앞의 글, 112;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p. 708, 1269.

내릴 가능성이 많다.⁶¹⁾

北韓엘리트는 社會主義政權이 樹立된지 한참 지났음에도 不拘하고 階級鬭爭은 심각하고 복잡한 局面에 처해 있다고 規定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社會主義革命이 아직 전한반도에 걸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反革命勢力이 미제와 南韓의 支柱와 資本家階級の 사주를 받아 가며 黨과 人民을 攻擊하려고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北韓 自體內에서 反革命勢力은 지극히 小數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狀況 때문에, 결코 階級鬭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狀況에서 프롤레타리아의 獨裁, 즉 노동당의 一黨獨裁를 늦추자고 主張하는 것은 거의 反逆에 가깝다.⁶²⁾

더구나 北韓 당국은 社會主義的 生産關係가 確立된 後에도 人間의 思想意識의 變化는 社會의 物質的인 變化보다 뒤떨어 진 채 오랫동안 남아 있고 資本主義의 影響力은 外部의 資本主義國家가 남아 있는 한 持續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精神生活 領域에서 利己的 個人主義的인 要素를 終局的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階級鬭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⁶³⁾ 이런 식으로 階級鬭爭을 人間性에 대한 鬭爭으로 連繫시키며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고집하는 한 複數政黨制와 多元的 中間集團의 實效的 保障에 의한 政治的 平等의 達成은 지극히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北韓도 경직된 階級鬭爭의 觀念으로 一黨獨裁를 고집하지 말고 최근의 東歐圈이 複數政黨制를 實效的으로 認定하는 추세에 順應하는 方向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즉 政治的 反對가 반드시 内外의 敵對分子들의 策動에 의한 것이 아니고 眞智한 社會主義者間에도 效率的인 社會主義建設을

註61)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856.

62) 앞의 책, p. 856

63) 社會科學出版社編,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理論, pp. 25 - 26 ;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p. 856.

위한 路線에 關係 深刻한 意見對立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意見對立이 建設적으로 利用될 수 있다는 前提아래 事문화된 憲법의 規定을 復活시켜 政治的 多元性을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c. 政治參與制度的 有名無實化

北韓憲法은 만 17세 以上の 모든 公민에게 平等하게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賦與하고 있다.(제 52조 1문) 그러나 이러한 選舉權의 保障을 의미있게 하기 위한 批判의 自由와 政治的 多元主義가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選舉나 기타 政治參與行爲도 政府와 黨의 決定에 正當性을 扶餘하는 象徴的 意識的 行爲로 전략하고 말았다.

北韓의 人民은 노동黨의 一黨支配體制下에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에서 100% 參與하여 100% 黨이 決定한 立候補者에게 贊成投票를 던지는 것이 現實이다. 最高人民會議는 그동안 8次에 걸쳐서 代議員을 選出하였는데 1962年 第 3次選舉부터 1986年 第 8次選舉에 이르기까지 100% 參與 100%贊成을 記錄하고 있다.⁶⁴⁾ 代議員選舉制度는 單一立候補制, 單一投票函制度의 自由가 없는 實情이다.⁶⁵⁾ 따라서 公式적으로 知名된 單一候補에 反對하는 것은 單純한 不滿의 表現이 아니라, 政府顛覆의 기도이거나 反逆行爲로 간주된다.⁶⁶⁾ 또한 最高人民會議는 87年 現在 50여회의 會議를 開催하였으나 단한건의 議案도 否決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憲法上 規定된 立法權을 전혀 行使하지 못하고 있다.⁶⁷⁾

그밖의 政治參與行爲로는 大衆行使로서 政治的 示威나 群衆集會에 參與하는 것과 個人的인 行使로서 公開裁判, 自我批判, 政治學習모임 등에 參與

註64) 김영래, 앞의 글, p.164.

65) 앞의 글, pp. 165 - 69.

66)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794.

67) 김영래, 앞의 글, p.165.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參與行爲도 決定權者와 被支配者의 區分을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 예상 밖의 結果를 招來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大衆은 重要的 決定으로부터 徹底히 排除되어 있으며 다만 작은 集團의 會議에서 技術的인 側面에서의 助言이나 質問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北韓의 政治構造에 따라 政治엘리트가 政治的 決定을 내리고 大衆은 다만 象徴的 參與에 의해 批准을 할 뿐이며 이러한 엘리트는 그가 맡은 바 職務를 修行하는 데 있어서 大衆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保護되어 있다.⁶⁸⁾ 따라서 大衆의 政治參與은 國家慶祝日에 行進하는 것, 軍服務에 應하는 것, 金日成全集을 읽으며 思想學習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d. 官僚主義

배링튼 무어에 의하면 社會主義革命을 승리한후 共產黨 指導者 들은 적어도 두가지 理由로 방대한 官僚界를 필요로 한다. 첫째로는 市場機能에 依存하지 않고 決濟를 計劃 指導하고 급속한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고, 둘째로는 一般大衆으로부터 엘리트가 원하는 態도와 行動을 끌어내기 위하여 強制와 說得의 手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⁶⁹⁾ 그리고 이러한 官僚制의 擡頭를 社會主義社會에서 政治的 平等을 沮害하는 第 1要因으로 본 모택동은 죽을 때까지 官僚制의 폐해를 除去하고자 勞力했으며 그의 永久革命論도 이러한 憂慮에 根據된다.

北韓의 경우 이러한 基本的인 要因 이외도 金日成이 權力을 완전히 掌握하여 黨內 派閥鬭爭이 弱화되고, 모든 外廓團體가 黨에 철저히 從屬됨에 따라 黨과 政府는 더욱 官僚化되고 계층화되고 경직화되었다. 따라서 下級黨員과 大衆의 創造的 情熱에 대한 強調, 黨과 大衆의 雙務的인 連

註68)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839

69) Moore, 앞의 책, p. 69.

繫를 強調하는 群衆으로선, 官僚主義에 대한 끊임없는 批判에도 불구하고 黨과 政府内에는 官僚主義가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⁷⁰⁾ 그리고 이러한 官僚制는 단순히 黨과 政府의 領域뿐만이 아니라 産業分野에도 擴散되고 있다.⁷¹⁾

黨指導部가 黨과 一般大衆의 呼吸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施行하는 群衆路線은 大衆의 애매하고 混同된 要求를 순화시키고 다듬어 새로운 計劃과 政策의 基礎로 삼아서 大衆에 施行한다고 主張되나 어느 大衆이 眞定한 大衆이고 어느 政策이 大衆의 要求와 必要에 附合하는 지에 대해서는 國적으로 黨指導部の 判斷에 달려 있는 데 불과하다. 群衆路線의 일환으로 産業生産에서 採擇된 代案의 體系는 勞動者들을 生産에 關係된 決定에 직접 參與시키고 勞動者의 創意성과 이니셔티브를 尊重하기 위해 採擇되었다고 하나, 그 具體的 內容은 다분히 形式的으로 黨과 工場의 간부의 말에 一般勞動者는 귀를 기울이고 萬丈一致的 갈채로 承認하며 결국 黨의 革命的 과업에 대한 公約과 忠誠의 交換에 불과하다고 한다.⁷²⁾ 또한 黨의 政策이 失敗하는 경우 黨指導部가 스스로 잘못을 認定한다기 보다는 地方의 黨員이나 下級黨員에게 責任을 전가하고 譴責을 하기 때문에 群衆路線 본래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群衆路線에서 強調하는 대중의 “集團의 知慧”보다도 中央黨의 命令을 더욱 重要時하는 官僚主義의 弊端은 여전히 남는다.⁷³⁾

e. 個人崇排의 問題點

끝으로 北韓의 政治的 平等성을 고려함에 이데올로기가 人格化되어 나타나는 金日成 個人崇排現狀을 빼놓을 수 없다. 個人을 集團에 從屬시키

註70) 스킨라피노와 이정식, 앞의 책, p. 779

71) 앞의 책, p. 802.

72) 앞의 책, p. 250.

73) 앞의 책, p. 129.

는 集團主義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가 個人崇排를 獎勵한다는 것은 歷史의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權力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北韓 社會의 모든 領域에 君臨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존재는 北韓 社會처럼 거의 모든 政治的 決定權이 한 個人에 의존하는 社會는 없다는 점에서 政治的 不平等을 深化시키는 要因이라고 아닐할 수 없다. “北韓의 金日成”이 아니라 “金日成의 北韓”이라는 말이 妥當할 정도로 한 個人에게 依存하는 社會가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金日成 사후의 北韓에 대해 비상한 關心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4) 全體的 評價

政治的 平等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普通選舉權 이외에도 社會의 構成員이 자신의 다양한 意見을 迫害의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러한 의견에 根據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集團行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단순히 體制順應的인 뿐만이 아니라 體制批判的으로 使用될 수 있을때에 비로소 政治的 平等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전일적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노동당 및 外廓團體를 통한 엄격한 組織化에 의하여 體制順應的인 政治的 표현과 活動만을 용인함으로써 지배엘리트와 一般大衆간의 政治的 不平等은 극심하다. 거기다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排는 이러한 現狀을 惡化시키고 있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政治的 平等이 그에 必要한 市民的 權利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심한 社會·經濟的 不平等에 의해서 有名無實化되고 있다면 北韓의 現實은 政治的 平等과 토대가 되는 社會經濟的 平等의 상당한 확보에도 불구하고 市民的 政治的 權利를 彈壓함으로써 政治的 不平等의 골이 깊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北韓社會主義는 共產主義 建設의 課題나 人間의 생활상의 基本的인 欲求 - 住居, 食料, 醫療, 教育 - 를 充足시키는 데 전념하여 社會經濟的- 平等的 領域에서는 주목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資本主義的 發展戰略을 採擇한 中南美나 아시아의 많은 第 3 世界國家가 自國民의 基本的인 社會 經濟的 欲求를 充足시키는 데 失敗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 意味가 크다. 그러나 政治的 平等的 實現에 있어서는 勞動黨의 一黨獨裁, 官僚主義 및 個人崇排의 政治構造가 政治的 多元主義와 批判 및 反對의 自由를 拒否하기 때문에 失敗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一般的 特徵을 비교해 보면 北韓의 이러한 現實이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社會主義國家의 一般的 特性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즉 資本主義國家는 市民的 政治的 權利를 保障하는 것을 國家의 第 1次的 義務로 받아 들이고 市民的 社會經濟的 生活은 私的인 經濟領域에 맡긴 데 비하여 社會主義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生存權을 保障하는 것을 國家의 第 1次的 義務로 받아들이고 市民的 政治的 權利는 副次的인 것으로 비교적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北韓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는 人間의 生存과 安全에 관련된 基本的인 欲求를 社會主義的 權利의 核心으로 把握하고 이를 充足시키는 데 전념하였다.⁷⁴⁾

이렇게 市民的 政治的 權利를 소홀히 하게 된 重要한 이유 중의 하나

註74) Schwab and Pollis, 앞의 글, p.168. 따라서 西歐로 亡命한 소련인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經驗은 새로 移住한 나라의 政府가 職業, 醫療, 住居를 그들에게 保障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 같은 글, 174)

인 榨取의 權利를 포함한 私的 所有權이나 기타 市民의 個人的 權利를 부르조아지의 排他的 享有物로서 他人과의 共同生活로부터 斷絶된 利己의 權利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資本主義 初期段階의 西歐의 市民民主主義에서 市民的 權利를 一般的으로 부르조아지만 享有하였고 그러한 權利의 行使가 부르조아에 의한 여타 階級の 榨取 및 支配를 許容 助長한 歷史的 事實은 認定된다. 하지만 역시 거기에는 人類의 바람직한 共同體에 대한 普遍的인 理想이 - 비록 부르조아지의 利益에 맞게 재단된 形態로 現實化 되었지만 - 내재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⁷⁵⁾

따라서 레닌이 國家와 革命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부르조아獨裁보다 훨씬 더 民主的이라고 했을 때 意味했던 대로 北韓을 포함한 社會主義國家는 부르조아 革命이 모든 市民의 權利와 自由로 宣言했지만 실제로는 부르조아 階級에게만 制限的으로 享有되었던 權利를 實質的으로 勞動者에게 許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의 連帶勞組가 要求했던 國家로부터 獨立된 勞動組合의 承認, 罷業權, 기타 勞動者 自治權도 아울러 認定하여 民主化의 大行進에 參與하여 實質的인 民主主義를 實現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民主主義는 각 構成員의 다양한 목소리의 실로 正義의 천을 짜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政治는 그 本質에 있어서 眞理보다는 構成員의 合意를 第 1次的으로 追求한다. 따라서 公式的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絶對的 眞理로서 추호의 批判도 容納하지 않는 곳에서 民主主義의 나무는 자랄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소련과 東歐의 社會主義國家의 改革熱風은 世界의

註75) 따라서 부르조아社會에 대해 가장 批判的이던 마르크스도 共產主義社會를 描寫함에 있어서 불란서 革命의 슬로건인 自由와 平等이라는 普遍的 概念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點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選舉權을 擴大한 普通選舉權을 強力히 主張했다; Shlomo Avineri,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pp.202 - 220

非常한 關心을 끌고 있다. 改革運動이 複數政黨制, 多元的인 中間集團, 批判 및 反對의 自由의 실질적 人정을 포함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生産力의 低下와 沈滯를 克服하기 위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로부터 發展된 技術과 資本을 輸入하고 市長經濟의 部分的 導入도 摸索하고 있다. 더구나 社會主義의 맹주적인 소련이 公式的으로 각 社會主義國家가 具體的인 歷史的 環境과 經濟的 條件에 따라 獨自的인 社會主義체제를 추구할 수 있다고 主張하며 다른 共產國家에 대한 帝國주의적 干섭의 명분이 되어 온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廢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社會主義의 實驗과 共存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變化가 實質的인 結果를 맺게 되면 東西의 對立이 敵對的 共存에서 名實相符한 平和的 共存으로 履行하는 重要한 계기를 마련하고 國際社會는 貧富의 南北問題에 대해서 좀더 많은 關心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擴大解釋하여 최근의 社會主義圈의 改革이 社會主義의 終焉이며 資本主義 -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勝利라고 主張하는 見解에 대해서는 두가지 點에서 警戒을 要한다. 먼저 歷史的으로 소련이 1920年代에 新經濟政策을 통하여 資本主義的 經濟政策을 採擇하였을 때에도 西方의 知識人이나 언론이 소련의 社會主義체제가 끝났다고 흥분했던 사실을 상기할 必要가 있다. 또한 그러한 견해는 自由民主主義나 資本主義體制가 가지고 있는 많은 矛盾과 갈등을 은폐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民衆의 經濟的 政治的 改革要求를 외면하고 現在의 體制를 理想化하여, 現狀維持를 원하는 基存의 保守勢力에게 體制維持의 名分으로 利用당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歐圈의 改革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質問을 던질 수는 있다. 社會主義國家의 政治改革은 과연 西歐式의 自由民主主義體制로의 變化를 意味하는가 아니면 社會主義式의 새로운 民主主義의 모색을 뜻하는가?

그들의 經濟改革은 완전한 資本主義 市長經濟로의 轉換을 意味하는가 아니면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接목인 새로운 混合經濟의 추구를 意味하는가? 이러한 體制變化의 摸索은 고전 마르크스主義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 그리고 이러한 變化가 東西의 冷戰秩序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

끝으로 北韓共産黨이 이러한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해서 어떠한 態度와 立場을 취할 것인가의 問題는 향후 南北關係에도 비상한 影響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社會主義圈의 일련의 變化는 後發社會主義國家인 北韓의 지배엘리트를 크게 당혹시킬 것은 分明하다. 北韓도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改革政策을 따라 새로운 政治的 民主化나 經濟의 自由化를 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外部의 變化를 무시하고 孤立政策을 추구할 것인가는 選擇의 岐路에 서있다. 이러한 問題는 北韓政圈에게 6.25와 中小紛爭에 이어 最大의 試鍊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최근의 態度를 주의 깊게 觀察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社會主義圈으로부터 예견되는 여러 가지의 直接 間接的인 開放改革壓力은 北韓의 支配엘리트내에서 여러가지 分裂을 助長할 可能性이 적지 않다. 나아가서 金日成 - 金正日 支配體制에 대한 새로운 挑戰이 豫想되기도 한다.

北韓의 경우 金日成은 종래의 體制를 維持하고 金正日體制로의 相續을 어려움없이 成就하고자 하지만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고무된 일부 黨에리트들이 經濟政策이나 政治體制的 改革을 주장할 可能性이 있고 이러한 主張이 증공이나 소련의 指導부의 지지를 등에 업을 경우 體制論爭이나 改革논쟁이 가열되고 더불어 黨指導부가 分裂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平壤祝典 이후 黨指導부가 理念宣傳을 強化한 것도 資本主義 國家로부터의 威脅보다도 최근의 社會主義圈의 改革에 의한 새로운 思想의 流入을 警戒해서

취한 措置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北韓은 體制競爭의 壓力을 南韓 및 資本主義國家로부터는 물론 다른 社會主義國家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北韓의 指導部는 北韓政圈樹立以後 최대의 理念的 危機를 맞을 可能性이 있고 이는 圈力鬪爭으로 秘話될 所持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北韓의 金日成이 11월 5일 北京을 訪問한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 〈單行本 및 論文〉

- (1) 金道昶, “憲法과 國家統一問題”, 「서울大學校 法學 8卷 2號」
- (2) 金明基, 「國際法上 南北韓의 法的 地位」. (서울; 華學社). 1980.
- (3) _____, 「南北共同聲明과 國際法」 (서울; 法文社), 1977.
- (4) _____, 「南北韓聯邦制統一論」 (서울; 탕구원), 1989.
- (5) _____, “國際法上 大韓民國의 正統性,” 「統一政策 4卷 4號」
- (6) _____,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 第195 III號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28卷 1號, 1983.
- (7) 김병오, 「民族分斷과 統一問題」 (서울; 한울), 1985.
- (8) 金炳昱, 小谷鶴次, “分斷國과 國際法の,” 「國際法外交雜誌 71卷 2號」, 立法調查月報, 1973.
- (9) 金禎鍵, 金大巡. 共譯. 잉그리드 데루피스 著. 「國際法과 獨立國」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 (10) 金淵洙, “東西獨의 交流와 韓半島 統一”. 「統一政策 4卷 3號」.
- (11) 金正均, “Hallstein 原則과 分斷國의 法人格”. 「國際法學會論叢 17卷 2號」, 1972.
- (12) 金俊熙, “分斷國家 一般理論에서 본 韓國 統一問題의 法的 性格”. 「統一政策 1卷 2號」.
- (13) _____, “오지리의 主權回復過程 및 中立에 관한 考察”. 「國際法學會論叢 8卷 1號」, 1963.
- (14) 金哲洙, “東西獨 基本條約과 東西獨의 法的 地位”. 「서울大學校 法學 16卷 2號」

- (15) _____, “分斷國 憲法과 統一問題”. 「서울大學校 法學 18卷 1號」
- (16) _____, 「分斷國의 問題」 三星文化文庫 20, 1972.
- (17) 金泰丸, “平和統一理念定立에 관한 하나의 試論”. 「共產圈研究」 1983. 6.
- (18) 金學俊, “韓半島 分斷의 背景 및 分斷固定化 過程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1卷 1號」.
- (19) _____, “第2共和國 時代의 統一論議; 그 내용과 政治的 評價”. 「國際政治論叢 45輯」, 1975.
- (20) 金學俊, 李相禹, 梁好民, 「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 華學社), 1980.
- (21) 南基煥, “分斷國家의 國際法的 性格과 韓民族의 統一問題”. 「統一政策 1卷 2號」.
- (22) 盧啓鉉, “韓國分割案의 歷史的 考察”. 「國際法學會論叢 8卷 1號」
- (23) 童德模,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안보와 평화통일문제”.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5號」, 1978.
- (24) 朴東熙, “平和政定着面에서의 韓國과 獨逸의 差異點”. 「統一政策 4卷 2號」.
- (25) 朴鍾聲, “UN을 통한 韓國統一方案”. 「國際法學會論叢 8卷 1號」.
- (26) 裴載湜, “南北韓의 法的 關係”. 「國際法學會論叢 21卷 1·2合併號」.
- (27) _____, “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統一方案의 比較考察”. 金道昶博士 華甲紀念論文集 「現代公法の 理論」 (서울; 學研社), 1982.
- (28) _____, “強迫으로 締結된 條約의 性質과 效力”. 「서울 大學校 法學 10卷 2號」.
- (29) _____, “韓日 基本條約研究”. 「國際法學會論叢 5卷 1號」.

- (30) 白行條,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 (서울; 大韓公論社), 1968.
- (31) 成均官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南北韓 同時 UN加入方案研究」 1978. 4.
- (32) 忠在昇, 「두개의 독일」과 “分斷國의 論理” 「世代」 1973. 8.
- (33) 李啓熙, “分斷國家의 民族問題” 「統一政策 4卷 3號」.
- (34) 李榮一, 「分斷時代의 統一論理」 (서울: 太陽文化社), 1981.
- (35) _____, 平和統一의 政治理論序設, 統一理論研究論叢
- (36) 李源明, “東西獨協商과 民族史的 正統性 - 1972年 基本條約締結 中心으로” 「統一政策 1卷 2號」.
- (37) 李薰譯, “北韓의 國際的 地位”. M. T. Haggard 「共產主義關係研究」. 1967.
- (38) 李漢基, “韓國統一問題와 UN의 權能”. 「國際法學會論叢 21卷 1·2 合併號」.
- (39) 張明奉, “「國家聯合」(Confederation)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33卷 2號」
- (40) 趙淳昇, 「韓國分斷史」 (서울; 形成社), 1982.
- (41) 韓亨鍵, “Korea und die Vereinten Nation”. 「國際法學會論叢 27 卷 1號」.
- (42) _____, 「南北韓의 UN同時加入問題」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83.
- (43) _____, “分斷國家인 南北韓의 法的 地位”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 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72.
- (44) 統一院, 「民族史的 正統性研究論叢」, 1976.
- ① 金東熙,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관한 法的 根據”
- ② 金俊熙, “分斷國家 主權의 合法性에 관한 論考”
- ③ 朴東熙,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에 관한 法的 究明— 韓日基本條約”

- ④ 裒載湜,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性에 관한 法的 究明—
UN의 承認과 그 效果를 中心으로”.
- ⑤ 韓亨建, “大韓民國의 法統性 論究; 法的 韓位를 中心
으로”.
- (45) _____, 裒載湜, 崔大權, 盧明濬. 「韓國統一方案의 法的 問題」.
1972.
- (46) _____, 裒載湜, 白忠鉉, 「南北共同聲明과 法的 地位」, 1972.
- (47) _____, 金雲泰, 「統一論議의 법위와 그 形成方向」, 1972.
- (48) _____, 金學俊, 「分斷의 背景 및 分斷固定化에 使用할 對外 與
件」, 1974.
- (49) _____, 崔聖俊, 趙基洙, 「韓國統一問題와 他 分斷國家 統一問題와
의 比較」, 1974.
- (50) _____, 「大韓民國의 民族史的적 正統性」, 1976.
- (51) _____, 韓亨健, 「南北韓關係의 進展에 따르는 法的 地位問題
(I)」, 1977.
- (52) _____, 朴東熙, 「南北關係進展에 따르는 諸般 法的 問題와 解消
方案」, 1977.
- (53) _____, 金成勳, 「軍事緊張緩和를 위한 南北韓 競爭解決 方案 및
이에 따른 諸般 法的問題」, 1979.
- (54) _____,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1989. 9.

II. 外國文獻

1. Monograph

- Carwford, James.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79.
-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1956.
- Henderson, Gregory, Lebow, R.N. Stoessinger G. John.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 Hungdah Chiu. Robert Dawnen. (ed) Multi-System Nations &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ermany, Korea, and China. (Proceedings of a reg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December 1, 1981.
- Lautepacht, H.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7.
- O'Brien, William V. The New Nations In International Law & Diplomacy, The Institute of World Polity. Georgetown Universi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5.
- Srivastave, M.P. The Korean Conflict: Search for Unification.
New Delhi: Prentice Hall of India, 1982.
- Whetten, Lawren L. Germany East & West.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0.

2. Articles

小谷鶴次 “分裂國의 法的 地位” 國際法外交雜誌 86卷 1號

Crawford, James “The Criteria for statehood on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6-1977,
Vol.48.

Herz, JohnH. “Korea & Germany as divided Nations : The
Systematic Impact” Asian Survey, Vol.XV, No.11,
November 1975.

Johnston, Ray E. E. “Problems of International Status &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New Nations Resulting from
Partition.”

Kelsen, Hans. “The Legal Status of German to the Federation of
Berl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9, 1945.

I. 國內文獻 - 〈單行本 및 論文〉

- (1) 美聲允, “聯邦主義 統合理論에 관한 研究”「東國大學校 行政論集 第13輯」, 1983.
- (2) 具本泰, “南北接觸을 위한 理論의 定立”. 「統一問題研究報告書 第1輯」.
- (3) 「國際問題」, “북괴는 왜 연방제를 주장하는가”, 1978年 7月號.
- (4) 고병철, “The United Nations & the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Journal of Korean Affarirs〉 Vol.3, No.4, 1974.

- (5) 金璟祚, “區州共同體의 法的 構造에 關한 考察” 「國際法學會論叢 16卷 2號」.
- (6) 金箕範, “聯邦制國家의 特徵 및 諸 類型” 「考試界」, 1958. 3.
- (7) 金成福, 譯, 「聯邦主義論」, 랄프H. 가브리엘 編, (서울; 乙酉文化社), 1960.
- (8) C. I. Eugene Kim. “Various Formulae for Korean Unification”.
〈Korea & World Affairs〉. Vol.6, No.1, Spring 1983.
- (9) 김동현, “Building a Model of Political Systems Integration -
Toward Korean Unification-” 〈Korea & World Affairs〉
- (10) 金明基, “國際法上 高麗聯邦制의 矛盾性” 「國際問題」, 1981年 6月號.
- (11) _____, “聯邦制의 一般理論과 高麗聯邦制案 批判”
- (12) 金正均, “南北韓間의 協定形態에 關한 研究”. 「國際法學會 論叢 30卷 1號」, 1985.6
- (13) _____, “國際法上的 分合모델과 分斷體 統一모델의 比較類型的 考察” 「國際法學會 論叢 20卷 1·2合併號」
- (14) _____, “同時 UN加入과 調節議定”. 「國際法學會 論叢 23卷 1·2 合併號」
- (15) _____, “複合制의 國際的인 法人格”. 「國際法學會 論叢 10卷 1 號」.
- (16) _____, “分斷國의 統一形態에 關한 考察”. 「國際法學會 論叢 28 卷 1號」.
- (17) _____, “國家의 複合形式” 「法政」, 1964. 8.
- (18) _____, “A study on the Problem of South & North Korea's Simulataneous Admission into the United Nations from

-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Korean Observer)
Vol. IX, No.3, Autumn, 1978.
- (19) 朴在圭 譯, 「聯邦主義論」, Velerie Eaelw(ed.), (Federalism : Infinite in theory and Practice. F.E.Peacock Publishers, Inc., 1968).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 194.
- (20) 朴河一, “南北聯邦制의 振斷”. 「統一政策 2卷 2號」
- (21) _____, “北韓의 聯邦制 統一方案에 대한 對備策”. 「統一問題 研究」.
- (22) 金正均, “國家의 類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法學 26卷 1號」, 1985.
- (23) 安榮大, “南北聯邦制論 批判”. 「統一政策 6卷 2號」, 1980.
- (24) 梁 建,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方案提示와 法的 問題”. 「國際法學會 論叢 26卷 1號」, 1982. 2.
- (25) 柳錫烈, “‘北韓의 南北聯邦制’ 分斷 考察” 「外交安保研究院」, 1982. 5.
- (26) 요한 갈통, “過程으로서의 統一”. 「統一政策 1卷 1號」.
- (27) 柳錫烈, “南北聯邦制主張에 대한 對應策”. 「外交安保研究院」, 1980.
- (28) 尹炳益, “分斷國家의 統合理論에서 본 多角的인 南北交流提議評價” 「統一政策 2卷 2號」.
- (29) 尹志顯, “남아프리카聯邦의 比較”. 「立法調查月報」, 1965. 4-6
- (30) 李相冕, L.C.Green對談, “國際法과 平和思想” 「現代社會 第12卷」. 現代社會研究所 여름, 1985.
- (31) 李相禹, “平和統一의 狀況變數 分斷” 「統一政策」 Vol.1, No.1, Spring 1975.

- (32) 李昶雨, 鄭然植, “南北韓 對話와 東·西獨의 接近方式”. 「慶北大學 校 法大論叢 第18輯」, 1980.
- (33) 李英一, “平和統一의 政治理論序設”. 「平和統一研究論叢」.
- (34) 李長熙, “統一原則으로서의 自決原則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統一論叢 5卷 1號」, 1985.
- (35) 李垞鎬 譯, “聯邦制度”, 버너드·휴윌츠 著, 「法曹」, 1959.12.
- (36) 張基鵬, “和解政策과 南北韓의 法的 關係”. 「國際法學會 論叢 26卷 2號」, 1982. 2.
- (37) 전덕주, “Is the Korean Confederation Practicable?”, 「Korea & World Affairs」 Vol.4, No.2, 1980.
- (38) 鄭大華, “80年代의 統一의 可能性과 統一方案”. 「부산대 통일논총 3집」, 1981.
- (39) 丁得圭, 朴河日, “分斷國의 統一政策과 共存政策의 均衡維持方案”, (統一問題研究).
- (39) 韓亨健, “西獨과 東獨의 法的 關係”. 「國際法學會 論叢 26卷 2號」, 1982. 2.
- (40) 咸秉春, “韓半島의 聯邦主義制度 - 韓國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8, No.4, 1970. 12.
- (41) 洪性化, “南北韓 接觸以前의 法的 關係”. 「國際法學會 論叢 26卷 2號」, 1982. 2.
- (42) 統一院, “北韓의 聯邦制 統一主義에 대한 批判과 對策”. 1973.
- (43) _____,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特別課程」, 1974.(2)
- (44) _____, 金正均, 「國際法上에서 본 北韓의 聯邦制 案에 관한 研究」, 1977.

- (45) _____, 金雲泰, 統一研修所, 「統一問題」, 1984.
- (46) _____, 尹炳益, 統一研修所, “北韓의 聯邦制批判”, 1983.
- (47) _____, 李相禹, “機能主義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方案”. 「韓國安保環境 第1輯」.
- (48) _____, 鄭鎮滑, 「인도지나聯邦形成 論議의 歷史的 考察」, 1979.
- (49) _____, 崔大權·桂喜悅, 統一憲法關係研究 (1) 「世界 各 聯邦國家 憲法の 成立背景 및 類型別 比較研究」.
- (50) _____, 權寧星, 統一憲法關聯研究(2) 「聯邦國家假定時 憲法秩序 및 統合機構에 관한 研究」.
- (51) _____, 權寧高, 統一憲法研究院(3) 「自由圈 및 共產圈 聯邦憲法 比較研究」
- (52) _____, 尹謹植, 「南北韓統一의 過渡的 機構모델에 관한 研究」
- (53) _____, 尹正錫, 「國家統合에 있어서의 問題點」
- (54) _____, 「民族化合 民主統一論」 I, II, IV.

II. 外國文獻

1. Monographs

- Ajyar, S.P. federalism&Social changes. London:Asia Publishing House, 1961.
- Anderson, William, The Nation&the states, Rivals or Partners? Westport, Connecticut:Greenwood Press Publishers1974
- Aron, Raymond. Peace&War New York:F.A.Praeger, 1968,
- Benson, George C.S.(ed). Essays in Federalism Claremont. Institute

for studies in Federalism, 1961.

- Bernier, Ivan.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 Longman Group Limited, 1973.
- Berrows, Bernard, Denton, G. Edwards G. (ed). Federal Solutions to European Issues. The Macmillian Press LTD, 1978.
- Boogman, J.C. plaat, G.N.v.d. (ed). Federalism - History & Current significance of a Form of Government. The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0.
- Dicey, A.V. ·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9th. ed. The Macmillian Press, 1956.
- Duchacek, Ivo D, Comparative Federalism - The Territorial Dimension fo Poli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0.
- Etzioni, Amitai,. Political Unific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 Forces. New York & Toronto : Holt, Rinehart & Winstion, Inc., 1965.
- Friedmann, W.,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 Friedrich, Carl J., Bowie, R.R. (ed studies in Federalism. Boston : Toronto : Little, Brown & Company, 1954.
- _____, International federalism in Theory & Practice. in system of Integ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 Elimer Plischke Princeton, Toronto, New York. London :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64.
- Hass, Ernst B. Beyond the Nation State. California : Stanford

- University Press, 1964.
- Hicks, Ursula K. , Federalism : Failure & Success, A Comparative study.
London & Basing stoke : The Macmillian Press Ltd.,
1978.
- Henkin, Louis. Foreign Affairs & The constitution. Mineola, New
York : The Foundation Press, 1972.
- Kim Youn Soo & Friedrich Buben. Korea & Germany the States & Future
Prospects of Divided Nations. Deutsch, Korea studien
Gruppe Kiel, 1978.
- Livingston, William S. Federalism & Constitutional Change. Oxford :
The Clarendon Press, 1956.
- Mackinnon, V.S. Comparative Federalism - A Study in Judicial
Interpretation.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64.
- Marzo, L.Di. Component Units of Federal Stat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Sijthoff & Noordhoff, 1980.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 Quadrangle Books,
1966.
- Mogi, sobei. The Problem of federalism.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31.
- Nye, J.S. Peae in Parts : Integration &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 Little, Brown., 1971.
- Riker, William H. Federalism. Origin, Operation, Significance.
Boston, Toronto : Little Brown & Company, 1964.
- ... federalism in Governmental Institutions &
Processes, (ed) F. I. Greenstein & N. W. Polsby. Massachusetts :

Addison Wesley, 1975.

Walker, Richard L. "Korean Unification: The Functional Approach What Prospects?" Korea Observer Vol. XI, No. 4, Winter, 1980.

White, Nathan. "the Necessity for a German Solution to Korean Problems." Korea & World Affairs Vol. 2, No. 3, Fall, 1978.

Wheare, K. C. Federal government. 4th. (ed) London, New York,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2. Articles

Beloff, Max. "International Integration & the Modern Stat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2, No. 1, 1963.

Birch, A. H. "Approaches to the study of federalism." 14 Political studies, 1966.

Brierly, J. L. "The Covenant & the Charter."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46,

Griffin, William L. "The Use of Waters of international drainage basin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5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9).

Huber, Max. "The Intercantonal law of Switzerlan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09)

Hacker, Jens. "Korea & Germany: Two different cases of Divided states." Korea & World Affairs Vol. 6, No. 1 Spring 1982.

Kunz, Joseph L. "International law by analogy." 4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1)

- Laylin&Bianchi. "The Role of Adjudication in International RiverDisputes."5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9).
- McWhinney, Edward. "Federalism, Biculturalism, and International Law."The Cor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III, 1965.
- McWhinney, Eduard. "Canadian Federalism, &the Foreign Affairs& Theaty Power. The Impact of Quebec's Quiet Revolution" Th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VII, 1969.
- Mitrany, D.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24, International Affairs, 1948.
- 〈Pluralism & Federalis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age Publications. Vol.5, No.4, 1984.
- Schindler, Dietric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Swiss Federal court in International Disputes."1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21.
- Scott, Robert D. "Kansas v. Colorado Revisited."52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8.
- Stein, Eric. "Treaty - Based Federalism, A.D. 1979 : A Gloss on Covey T. Oliver At the Hague Academy."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979.
- Schwarzenberger, G. International Law. Vol. II, London : Stevens&Sons Limited, 1968.

- Sohn, L.R. Cases & Other Materials on world law. 2nd. Brooklin: The Foundation Press, 1967.
- Starke, J.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6th. ed. London: Butterworths, 1967.
- Sorenson, M. (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Macmillian, 1968.
- Verzihl, J.H.W.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l.2, A.W. Sijthoff - Leiden, 1969.
- Wheaton, H.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1936.
- Whiteman, M.M.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I, II, Washington: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1968.

〈資料集〉

- (1) Brownlie, Ian. Basic Document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ian, 1968.
- (3)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London: Helen Hemingway Benton, 1980.
- (4) 市川正明, 「韓日併合歴史 第3卷」, 1978.
- (5) 「구한말 조약회찬」, (1876 - 1945) 상권 立法參考資料 第18號 國立立法調查局 1964.
- (6)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 1978.
- (7)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 南北編」, 서울: 안보통일 문제 조사연구회, 1972.

- (8) 盧重善 編, 「民族과 統一 I - 資料編」, 서울 : 사계절, 1985.
- (9) 統一院, 「南北韓 關係 資料集」, 1977.
- (10) _____, 「東西獨 基本條約에 關한 批判」, 1976.

Texts & Casebooks

- Fenwich, G.G. International Law. 4th. ed. New York : Appleton 1965.
- Ferguson, J.M. Manual of International Law. Vol.1, The Hague & London, 1884.
- Glahn, V.G. Law among Nations 4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 Green, L.C.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Cases, 4th. ed. Toronto : Oceana Publications., Inc., 1978.
- Fessup, P.C.A Modern Law of Nation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2.
- Kelsen, 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 Holt, 1967.
- O'Connell, D.P. International Law. 2nd. ed. Vol.1 London : Stevens, 1970.
- Oppenheim, Lawterpacht. International Law. Vol.2, 8th. ed. Longman., 1970.

南北韓憲法에 나타난 平等理念 考察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 1 연구관실)

서울·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서라벌인쇄주식회사

〈非賣品〉

